

[별표 8]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 1) 제7조제4항제1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 1) 시공실적의 증명은“별첨양식 5, 5-1 또는 6”에 따른다.
- 2) 전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전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 3)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 4)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5) 하도급공사 : 전 '1)과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3조에 따른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 1)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 3)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 4)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준공된 실적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2) 시공실적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3) 시공실적 실적금액 인정

가) 전2)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㉔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㉕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의 실적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만, 2020.12.31. 이전(민간공사는 2021.12.31. 이전) 발주한 공사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한다.

나)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마)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 받아 시공한 실적만 인정한다.

바) 하수급자가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한 부분의 실적의 1/2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6) 동일공사의 부분시공 등에 대한 유사 실적인정(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가) 실적보유사가 10개사 미만인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심사기준일 현재 10년을 초과한 시공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해공사가 심사기준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다)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7)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첨양식5'의 '주' 6'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업종별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5. 붙임

가.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5)

나.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6)